

과태료처분예고서

예고 제 호

과태료 처분대상자	성명	연락처	생년월일
	주소(주거지)		
위반사항	근거법	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	
	위반내용		
과태료 금액	금액		
	산출기초		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지식재산처장,
지방자치단체장

직인